

1. 共同住宅管理規則中改正令

建設部令 第514號 1992. 10. 9

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0조 제3항중 “2천원”을 “4천원”으로 한다.

[별지 제11호서식]·[별지 제12호서식] 및 [별지 제13호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

시행한다.

② (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명칭으로 본다.

□ 개정이유 □

주택관리사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의 응시수수료로는 시험시행을 위한 기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시험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 □

가.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함(제 20조 제3항).

나.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이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응시원서·자격증등의 발행자를 건설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변경함(별지 제 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).
〈건설부 제공〉